

담 당	책임자	AM	부점장

수출거래 추가약정서

【 D/A 포페이팅(Forfaiting) 거래 】

년 월 일

(주)하나은행 앞

본 인 _____ (인)

주 소 _____

본인은 (주)하나은행(이하“은행”이라 한다)과 제 1 조에서 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“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(기업용)”과“외국환거래약정서”가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약정합니다.

제 1 조(적용 범위) 이 약정서는 수출상이 수입상과 D/A 수출계약서를 작성한 수출거래로 수출환어음의 만기일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등 기산일로부터 180 일 이내인 다음 각호의 수출대금 채권을 매입하는 거래 및 이에 준하는 거래(이하 "D/A 포페이팅 거래" 라 한다)에 대해 적용합니다.

1. 국내에서 생산·가공·집하된 물품(용역 포함)을 수출하는 거래
2.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생산·가공한 물품 또는 국내기업이 위탁하여 외국에서 가공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

제 2 조(진술 및 보장)

본인은 은행에게 다음 각 항의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.

1. 본인이 제출한 D/A 수출계약서는 유효합니다.
2. 본인이 제출한 수출환어음 및 모든 선적서류는 진정하고 완전하며 D/A 수출계약서 조건과 일치합니다.
3. 수출환어음의 지급인이 행한 수출환어음의 인수는 진정하고 유효합니다.
4. 본인은 수출환어음 및 D/A 수출계약서 상의 권리를 양도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 권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요건(배서를 포함한다) 및 절차를 완료합니다. 은행이 수출환어음 및 부대서류의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국내외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없습니다.
5. 본인은 당해 D/A 포페이팅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중복하여 자금을 지원 받지 않습니다.
6. 본인이 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출하거나 은행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한 이후에는 은행은 결제기한 연장이나, 당해 D/A 포페이팅 거래와 관련하여 수입상과 어떠한 조건변경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.
7. 최근 수입상의 신용상태악화 등 D/A 포페이팅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습니다. (단 수입상의 신용상태악화 등 D/A 포페이팅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본인이 은행에 알리고 은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D/A 포페이팅 거래를 하기로 별도의 서면 동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)
8. 본인은 수입상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 은행이 수입상에 대한 신용평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응하고 제출서류에 대한 진정함을 확인합니다.

제 3 조(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) 본인은 수출환어음이 해외 추심은행(수입상 거래은행)을 통하여 인수된 이후에는 비소구조건으로 전환되어 수출환어음의 만기일에 수출대금이 입금되지 않더라도 제 4 조 제 2 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수출대금의 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 합니다.

제 4 조(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)

- ① 은행은 해외 추심은행(수입상 거래은행)을 통하여 수입상이 수출환어음 인수를 확정하기 이전에는 본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② 수출환어음의 인수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은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의 상환의무를 지고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.
 - 1. 제 1 조의 적용범위에 부합되지 않는 수출거래인 경우
 - 2. 제 2 조에 따른 진술이 허위이거나 보장사항을 위반하는 경우
 - 3. 본인의 귀책(선적서류의 위조, 물품의 하자·불량, 수입상과의 계약불이행 등)사항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
 - 4. 수입국 법원의 지급정지 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
 - 5. 수입상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를 인수하지 않거나 항변 또는 상계청구를 제기하는 경우
 - 6. 외국(수입상의 소재국 또는 수입대금 지급국)에서의 전쟁, 혁명, 내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수입국의 제한, 금지, 또는 환거래의 금지, 불능의 경우
 - 7. 본인이 해외수입상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해 은행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

제 5 조(수수료, 비용 및 손해의 부담 등) 입금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수수료, 비용 및 손해의 부담은 '외국환거래약정서 (제 1 장 공통사항 및 제 2 장 수출거래에 대한 특약)'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.

제 6 조(차액 정리) 수출대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해외은행(은행의 해외지점 포함)의 수수료가 공제됨에 따라 수출대금과 매입금액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본인은 그 차액에 대해 은행의 청구에 따라 즉시 지급하기로 합니다.

제 7 조(효력) 이 약정과 외국환거래약정서,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약정이 우선합니다.

제 8 조(기타 특약사항)

--

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,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,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	
본 인	(인)

본인의 자서확인	소 속		직 위		성명	(인)
----------	-----	--	-----	--	----	-----

